

의안번호	제 869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 
조례안

발 의 자	황규철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1년 10월 일

# 충청북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조례안

(황규철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69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1년 10월 일  
발 의 자 : 황규철, 김기창, 서동학,  
박우양, 연철흙, 전원표,  
박형용

## 1. 제안이유

「도로교통법」 제5조의2에 따라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 증진과 효율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 운영을 위한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함(안 제1조, 제2조)
- 나.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사업 및 지원신청과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 및 제4조)
- 다.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의 중단과 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 및 제6조)

## 3. 조례안 : 붙임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

다. 협의 : 충청북도 균형건설국 교통정책과

라. 조례안 예고 : 2021. 9.24. ~ 2021. 9.30.(의회 홈페이지)

## 충청북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도로교통법」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모범운전자연합회” (이하 “연합회” 라 한다)란 「도로교통법」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충북지부를 말한다.

제3조(지원사업)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 라 한다)는 연합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교통안전 봉사활동
2. 교통사고 예방 관련 행사 및 유인물 제작·배포
3.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
4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4조(지원신청 및 정산 등) ① 연합회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, 관리 및 정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를 따른다.

제5조(지원의 중단) 연합회가 보조금을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서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도지사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

제6조(감독 및 평가)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

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관계서류와 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,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 집행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연합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하여 평가하고,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관련법령

### □ 도로교통법

제5조의2(모범운전자연합회)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모범운전자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. [본조신설 2012. 3. 21.]

제5조의3(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)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운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국가는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<신설 2016. 1. 27.> [본조신설 2012. 3. 21.]

### □ 도로교통법 시행령

제6조의2(모범운전자에 대한 복장 및 장비의 지원) ① 경찰청장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모범운전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복장: 모자, 근무복, 점퍼 등

2. 장비: 경적, 신호봉, 야광조끼 등

② 제1항에 따른 복장 및 장비의 지급 기준 및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 [본조신설 2012. 9. 7.]

### □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

제5조(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) ①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.

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이 법이 정하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**제6조(보조금의 지원)**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(이하 “등록 비영리민간단체”라 한다)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(이하 “공익사업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

**제7조(지원사업의 선정등)**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매년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유형을 결정한다.

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유형내에서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적인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을 정한다. 이 경우 개별적인 지원사업의 선정은 공개경쟁방식을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국회의장 또는 해당 시·도의회의장이 추천한 3인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관계전문가들로 구성한다. <개정 2020. 6. 9.>

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 구체적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1월 31일까지 공고하거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

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3. 8. 1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위원자격,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**제8조(사업계획서 제출)**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, 소요경비,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해당 회계연도 2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3. 8. 1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, 2020. 6. 9.>

**제12조(보조금의 환수등)**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그가 받은 보조금을 환수한다.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에도 또한 같다.

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반환할 비영리민간단체가 기한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

# 충청북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

## 1. 사업개요

- 「도로교통법」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

## 2. 비용발생 요인

- 교통안전 봉사활동, 교통사고 예방 행사 및 유인물 제작·배포,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 추진을 위한 예산

## 3. 관련조문

- 안 제3조(지원사업)

## 4. 비용추계 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현재( '21년도) 추진중인 모범운전자연합회충북지부 지원사업과 비교하여 산출

- 교통사고줄이기운동 지원 : 7,000천원(도비)
-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모범운전자 봉사교류 : 15,000천원(도비)

나. 추계 결과 : 2022년부터 매년 현재 지원 수준의 22,000천원 필요

(단위: 천원)

구 분	계	1차년도 (2022년)	2차년도 (2023년)	3차년도 (2024년)	4차년도 (2025년)	5차년도 (2026년)
모범운전자연합회 충북지부 지원사업	110,000	22,000	22,000	22,000	22,000	22,000

※ 금년도와 동일수준으로 지원금 변동없음

다. 재원조달방안 : 도비

## 5. 연도별 비용추계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2년)	2차년도 (2023년)	3차년도 (2024년)	4차년도 (2025년)	5차년도 (2026년)	계
세 출		22,000	22,000	22,000	22,000	22,000	110,000
도비(지원사업)		22,000	22,000	22,000	22,000	22,000	110,000
재원 조달		22,000	22,000	22,000	22,000	22,000	110,000
자체 수입	소 계	22,000	22,000	22,000	22,000	22,000	110,000
	지방세	22,000	22,000	22,000	22,000	22,000	110,000
	세외수입						